

제 1206 호
1985.10.24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업무팀
편집인 : 공무원 이광우
전화 : 731-6111-3
안 색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계	도시계획	공공개발	공보관	공람

시 보

차 례.

◎ 고 시	
제 712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변경허가	3
제 713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	3
제 714 호 : 마포로제 1 구역제 50 지구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	4
제 715 호 : 도시계획사업 (시장) 변경시행허가	4
◎ 공 고	
제 635 호 : 도시계획안공고	5
제 636 호 :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규칙(안)입법예고	6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637 호 : 주택개발사업관리규칙분칙일부변경공람공고	8
제 638 호 : 전문건설업면허취소처분	9

◎ 사 령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712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변경허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4 호 (82.9.11) 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허가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한다.
- 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(도시정비과)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0.24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위치 - 서울시구로구시흥동 산 100 의 4 의 1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- 도시계획 시설 (학교) 시설

다. 사업면적 - 39,779㎡ (12,033명)

라. 세부시설계획

당 초	변 경	비 고
건축면적 - 2,115㎡	3,455.22㎡	증 1,340.22㎡
기축연면적 - 6,949㎡	13,235.67㎡	증 6,286.67㎡

마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 - 서울특별시 구로구시흥동 산 100 의 4

학교법인동일학원이사장 최 용 찬

바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
1) 당초 - 1982.9.20-1985.6.30

2) 변경 - 1982.9.20-1987.6.30

사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(생략)

아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의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, 성명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713 호

도시계획 시설 (도로)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

- 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1 항 및 제 13 조 2 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1 항 1 호 나목 규정 및 제 7 조의 2 제 2 항과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제 3 조 3 항, 7 항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4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10.24

서울특별시장

○ 시설조서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폭원(m)	연장(m)	기 점	종 점	비 고	
1	기정	소로	2	8	300	암사동 20	암사동 73-4	사업시행선에 따른 폭원변경 B=14-35m
	변경	"	"	"	300	암사동 20	암사동 73-1	
2	기정	"	"	"	30	암사동 2-1	암사동 2-1	
	변경	"	"	"	30	암사동 2-1	암사동 2-1	
3	기정	"	"	"	46	암사동 40-4	암사동 40-5	
	변경	"	"	"	54	암사동 40-4	암사동 354-2	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714 호

마포로제 1구역제 50 지구재개발
사업시행변경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324 호 (83.6.28)
로 사업시행 인가된 마포로제 1 구역
제 50 지구의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이

변경됨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제 12
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
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변경인가
하고 동법 제 16 조 및 동법시행령
제 21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1985.10.24

서울특별시장

가. 변경인가 내용 (건축개요)

구분	기 정	변 경
층 수	지상 15 층, 지하 5 층	지상 16 층, 지하 5 층
주 용 도	업 무 시 설	업무 및 판매, 위락시설

나. 변경사유: 건축계획 변경결정에 따
른 인가 변경

다. 기타사항: 변경전 인가내용과 동일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715 호

도시계획사업(시장)변경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5호 (80.12.27)
호로 도시계획사업(시장) 시행허가
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76 호(81.

3.16)로 변경시행허가된 강동구암사동
480-1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
조,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권
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
업(시장)변경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
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
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에게 보인다.

1985.10.24

서울특별시장

<p>가. 사업시행지 : 강동구 암사동 480-1 번지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┌ 종류 - 도시계획사업 (시장) 변경 ├ 시행 └ 명칭 - 강동제일시장 <p>다. 사업규모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┌ 시장연면적 - 기정 - 4,010.96 ㎡ ├ 변경 - 3,988.66 ㎡ └ (감 22.3 ㎡) 	<p>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80-1 강동제일시장 (주)</p> <p>대표이사 홍 홍 표</p> <p>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'85.10-'86.10</p> <p>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, 지 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 리명세서 : 별항</p> <p>사. 토기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토지소재지	지목	지 적	소 유 자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강동구 암사동 480-1	대지	3,306 ㎡ (3,377.6)	강동제일시장 (주) 대표 홍 홍 표	

아. 시행허가 설계도서 : 생략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35 호

도시계획 (안) 공고

1.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동법
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
울특별시 도시계획(안)을 다음과 같
이 공고하고 아래장소에서 14일간
- 도시계획안

- 일반인에게 보인다.
2. 도시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
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
소에 제출하시기 바란다.
- 가. 공람기간 : 85년 10월 25일~
85년 11월 8일까지 (14일간)

1985년 10월 24일

서울특별시장

구 분	도시계획안	위 치	규 모	공람장소
도시계획시설	도로변경	종로구 묘동90-1~ 봉익동 53 번지일대	폭원 축소 20m → 15m L = 210m	종로구청 도시정비과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36 호

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
규칙 (안)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규칙(안)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한다.

1985년 10월 24일
서울특별시장

1. 자치법규 제정 :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규칙 (안)
2. 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가. 제정사유
 - 지하도상가관리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도로써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민통행 편의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규칙 (안)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제정 (안) 주요내용 및 취지

항 목	제 정 (안)	취 지	비 고
제 3 조	○ 지하도상가 시설의 사권행사불가 ○ 지하도상가 관리운영권의 양도, 양여, 대부 또는 담보제공불가 단, 사전승인시 가능	사권의 제한	
제 5 조 및 제 7 조	○ 관리자는 전기설비 관리에 관한 보안규정을 제정하고 동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 ○ 보안담당자 - 관리자는 전기보안담당자를 선임	전기시설물관리	
제 8 조	○ 지하도상가 통로의 조도 100-500룩스	통행인 보호	
제 14 조	○ 관리자는 지하도상가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을 자기부담으로 가입	시설물 보호	
제 16 조	○ 지하도상가 관리상 관리자의 의무 - 점용내용의 안내표지판 설치	상가관리상의무	

항 목	제 정 (안)	취 지	비 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하도출입구 함시개방, 심야는 관리청이 조정 - 소음분진발생, 구결, 잡상 보도에 상품진열 환경을 더럽히는 행위등 단속 - 지하도내 시설의 변경은 관리청의 승인 		
제 18 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대보증금의 총액은 지하도건설시 소요된 총공사비를 초과할 수 없음 ○ 규칙시행일 이후에 건설준공된 지하도상가는 임대보증금 징수불가 단,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1/3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. 		
제 19 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리자는 임대보증금의 환불준비금을 총공사비에 도매물가상승분을 승합한 금액의 15/10,000 이상에 해당금액을 매년 적립 ○ 적립방법은 관리자가 결정하되 금융기관 예입시 관리청과 연대로 인감제 제출 ○ 이미 관리청이 예입한 적립금은 3월이내 이 규정에 따라 조치 ○ 미적립상가는 이 규정에 의한 금액을 3년이내에 분할적립 조치 	임대보증금 환 불 준 비	
제 20 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대료 "서울특별시 상업용건물임대료안정화기준" 이상으로 인상 불가 ○ 임대료 인상은 협회에 사전승인 	임대료 징수	
제 22 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차인은 점포의 전매, 전대금지 ○ 전매, 전대시에는 임대권 회수 ○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전매, 전대 	점포전매금지	

항 목	제 정 (안)	취 지	비 고
	된 점포는 3년 이내 임차인이 직영 ○ 점포의 전대차와 관련된 손해를 관리청이나 관리자에게 청구불가		
제 25 조	○ 관리자는 매장면적의 30%를 직영	상 가 운 영	
제 26 조	○ 지하도상가에 입주금지업종 지정 . 개스, 석유, 연탄등 위험연료 사용업종 . 식품류, 조리판매업종 . 하수과다 배출업종 . 주 접	입주금지업종	
제 29 조	○ 협회는 지하도장가 관리에 대한 관리청의 위임사항을 성실히 이행	협회업무및 감 독	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37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
일부변경 공 략 공 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88 호 ('79. 10.23) 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아현 1 구역 1 구획에 대하여 도시재개발 법 제 41 조 제 2 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일부변경하고 동조 제 5 항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일로 부터 30 일간 이해관계 인에게 보인다.
2. 동 공고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송달할 것이나 미수령자

에게는 동공고로 갈음하고 변경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동 변경인가시까지 사용수익을 제한하며 관계도서는 마 포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인다.

1985.10.24.

서울특별시 장

- 가. 명 칭 : 아현 1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
- 나. 위 치 : 마포구아현동 21 번지일대
- 다. 면 적 : 1,289 평방미터
- 라. 변경인가내역 : 생략 (개별통보문 참조) - 필지분할
- 마. 시행자 : 서울특별시 장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638 호
 전문건설업 면허취소 처분
 건설업법을 위반한 다음업체에 대
 하여 건설업법 제 52조제 1 항 제 5 호
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면허취소
 처분을 하겠기 공고한다.
 1985. 10.24
 서울특별시장

업종및면허번호	상 호	대표자	영업소재지	사 유	처분사항	근거법규
상하수도설비 (서울 83-13-176)	성원산업사	김 태 리	강남구청담 동 97-7	면허대여	면허취소	건설업법 제 52-1-5

사 령

◎ 1985년 10월 24일자 령제 399 호

성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김 영 세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 항제 1.2 호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	성동구 도시정비과장	지방토목기과
황 석 문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 항제 1.2 호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	강남구 도시정비과장	지방토목기과
강 순 천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 항제 1.2 호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	북부수도관리 사업소 소장	지방토목기과
강 재 우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 항제 1.2 호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	영등포구 건축과장	지방건축기과
손 기 성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 항제 1.2 호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	석대문병원 약제과장	지방약무기과
이 상 현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 항제 1.2 호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	강서구보건소 의약계장	지방약무사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이재철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 규정에 의거 해임에 처함	강남구 도시정비계장	지방토목기사
주수일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	종로구 건축과장직대	지방건축기사
조용희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	종로구 건축 1계장	지방건축기사
김명국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	도봉구 건축 2계장	지방건축기사
최종성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	마포구 건축 1계장	지방건축기사
차재창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	대천산배수지	지방전기기사보
장인수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 규정에 의거 감봉 3월에 처함	강서구보건소	지방약무사보
권병환	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	아동병원	지방별정직 7급 상당

© 1985년 10월 24일자

병제 400호

성명	발령사항	원부서	직급
정규원	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'85. 7. 23 자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	영등포병원	지방의무부기감

서울특별시